



## Q&A로 알아보는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 지난 9월 2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회원사가 처음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용 및 해석에 대해 안내한다[편집자주]

자료제공 :  대한상공회의소

### 적용대상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



### 적용대상자

- ‘공직자 등’
  - 국가·지방공무원 및 그밖에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 장소적 적용범위

- **속지주의**
  -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
  -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외국인에게 적용
- **속인주의**
  -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에 대해서도 적용



**법령내용**

**적용대상 기관**

**1) 거래 상대방이 공직유관단체인지 여부**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한 단체만 해당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에서 확인 가능

**2) 거래 상대방이 공공기관인지 여부**

- 기획재정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단체만 해당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

**3) ‘회사’ 또는 ‘社報를 발행하는 회사’가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인지 여부**

-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는 모두 해당
  - \* 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신문사업자 : 일반·특수 일간신문사업자 및 일반·특수 주간신문사업자
  - \* 정기간행물사업자 :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자(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은 제외)
  - \*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 사업자
- 방송사업 : 방송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www.kcc.go.kr)에서 확인 가능
- 신문 및 정기간행물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서 확인 가능

**법령내용**

**적용대상자**

**1) 공무원 등의 경우 임직원의 적용범위**

- 행정기관에 근무해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대상 아님(예: 기간제 근로자)
-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대상(예:

공중보건의, 청원경찰 등)

- 공무원 신분인 경우 수행직무를 불문하고 모두 해당

**2)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임직원의 적용범위**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원에는 비상임 임원을 포함
- 근로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자를 포함
- 행정 지원, 단순 노무 등 수행직무를 불문하고 모두 해당

**3) 언론사의 경우 임직원의 적용범위**

- 언론사의 경우 보도·논평, 행정업무 등 수행직무를 불문하고 모두 해당
- 사보 발행기업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해당

**4)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야만 법규정을 적용**

**법령내용**

**장소적 적용범위**

**1) 대한민국의 영역이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의미**

- 행위와 결과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적용대상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내국인 공직자도 처벌 대상
  - ※ 공무원의 경우 국내법에 따른 공무원만이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해당
    - 주한 외국대사관의 직원 : 해당하지 않음
    - 재외 한국대사관에 근무중인 공무원 : 해당함
    - 외국법에 따른 외국 공무원 : 해당하지 않음



**01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자회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인지?

**답변** 모회사가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그 자회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은 정부가 지정·고시한 기관에 한하며, 당해 자회사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회사의 경우 법령에 따라 당해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은행 등 금융기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지?

**답변**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한 일부 금융기관은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질문** 공공기관의 계약직 직원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인지?

**답변** 행정기관의 경우와 그 외 기관의 경우에 따라 구분됩니다. 행정기관 계약직 직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아니라면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공직유관단체 계약직 직원은 당해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질문** 공공기관인 공기업의 비상근임원도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인지?

**답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권익위원회는 상근·비상근 여부나, 보수를 지급받는지 등에 관계없이 공직 유관단체의 임원으로

로서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공직유관단체인 협회의 비상근 명예직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답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권익위원회는 상근·비상근 여부나, 보수를 지급받는지 등에 관계없이 공직 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2 공무수행사인(公務受託私人)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위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은 공무수행

**질문** 사인인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

**답변** 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국무총리령, 부령(시행규칙) 뿐만 아니라 조례·규칙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시·훈령 등도 포함됩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공무

**질문** 수행사인인지?

**답변** 법령에 근거없이 단순히 공공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담당부서만 공무수행사

**질문** 인에 해당하는지?

**답변** 청탁금지법은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당해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동법을 적용(정확히는 일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원회는 수탁 기업의 대표자 및 실질적 수탁업무 종사자를 적용대상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